



스티로폼 분쇄기 점검 중 협착



사업장에서 피해자가 폐스티로폼 분쇄작업을 위해 분쇄기를 가동하였으나, 분쇄기날이 움직이지 않자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투입구 상부에 올라가서 점검하던 중 분쇄날에 다리가 협착되어 사망



발생 원인

- 설비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점검작업을 수행

안전작업

TIP

1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 정지

- 기계 등의 점검 · 수리 등의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고 다른 작업자가 기계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기동스위치에 잠금장치 설치 및 '점검 중' 표지판 부착
- ※ 조작반 내 주전원 스위치는 Key type으로 설치

2 비상정지장치 설치

-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설비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 설치



점검중표지판 부착



수동복귀형 비상정지스위치

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 (고장 난 기계의 정비 등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(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 (운전의 정지)





스티로폼 분쇄기 점검 중 협착

설비의 전원을 차단한 후 점검을 실시하세요!

